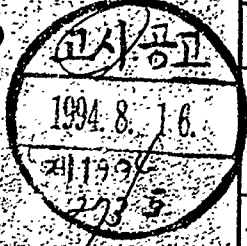


함께하는 고통분담, 함께하는 밝은 내일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91-4 / 전송 731-6795

문서번호	주개 58533 - 18A3	취급		시	장
시행일자	1994. 8. 16	보존	준영구	영장	
(경유)	(제 1 안)	주택국장	전결		
수신	내부결재	주택개발과장		협조통제관	
참조		개발 2 과장		법무담당관 심사필	
		기안	이성영	협조 주택국장	



제목: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(경미한 변경)

1. 건설부고시 제1992-967호(92.10.13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3-270호(93.9.8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지정된 우리시 관내 연희제1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와 같은법시행령제3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구변경(면적정정) 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구지정 변경 내역

지구명	위치	면적 (㎡)		비고
		기정	변경	
연희제1	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 일대	16,808	16,604	감 204㎡ (면적정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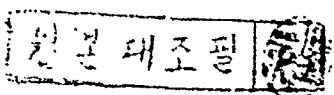
- 첨부 1. 고시문 1부.
- 2. 도면 1부. 끝.

(제 2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재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연희제1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, 같은법시행령 3조4항, 같은법시행령 12조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주택개발과장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(면적정정)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1992-967호(92.10.13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3-270호(93.9.8)로 변경 지정된 연희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제3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(면적정정)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1. 고시문 1부.

2.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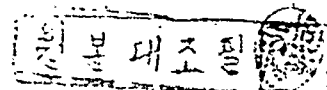
(제 4 안)

수신 서대문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통보

1. 건설부고시 제1992-967호(92.10.13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3-270호(93.9.8)로 변경 지정된 연희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와 같은법시행령제3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(면적정정)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,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,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하고



2. 특히 변경지정된 내용을 포함 조속한 시일내 개선계획이 변경수립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.

첨부 1. 고시문 1부.

2. 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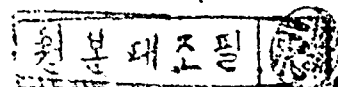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고시 제1992-967호(92.10.13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3-270호(93.9.8)로 변경 지정된 연희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와 같은법시행령제3조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(면적정정)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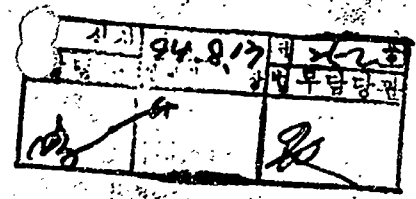
첨부 1. 고시문 1부.

2. 도면 1부. 끝.

주택개량과장

수신처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



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 호
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1. 건설부고시 제1992-967호(92.10.13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3-270호(93.9.8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된 서울특별시 연희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와 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4년 8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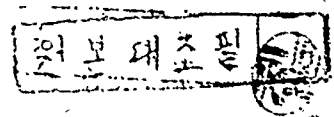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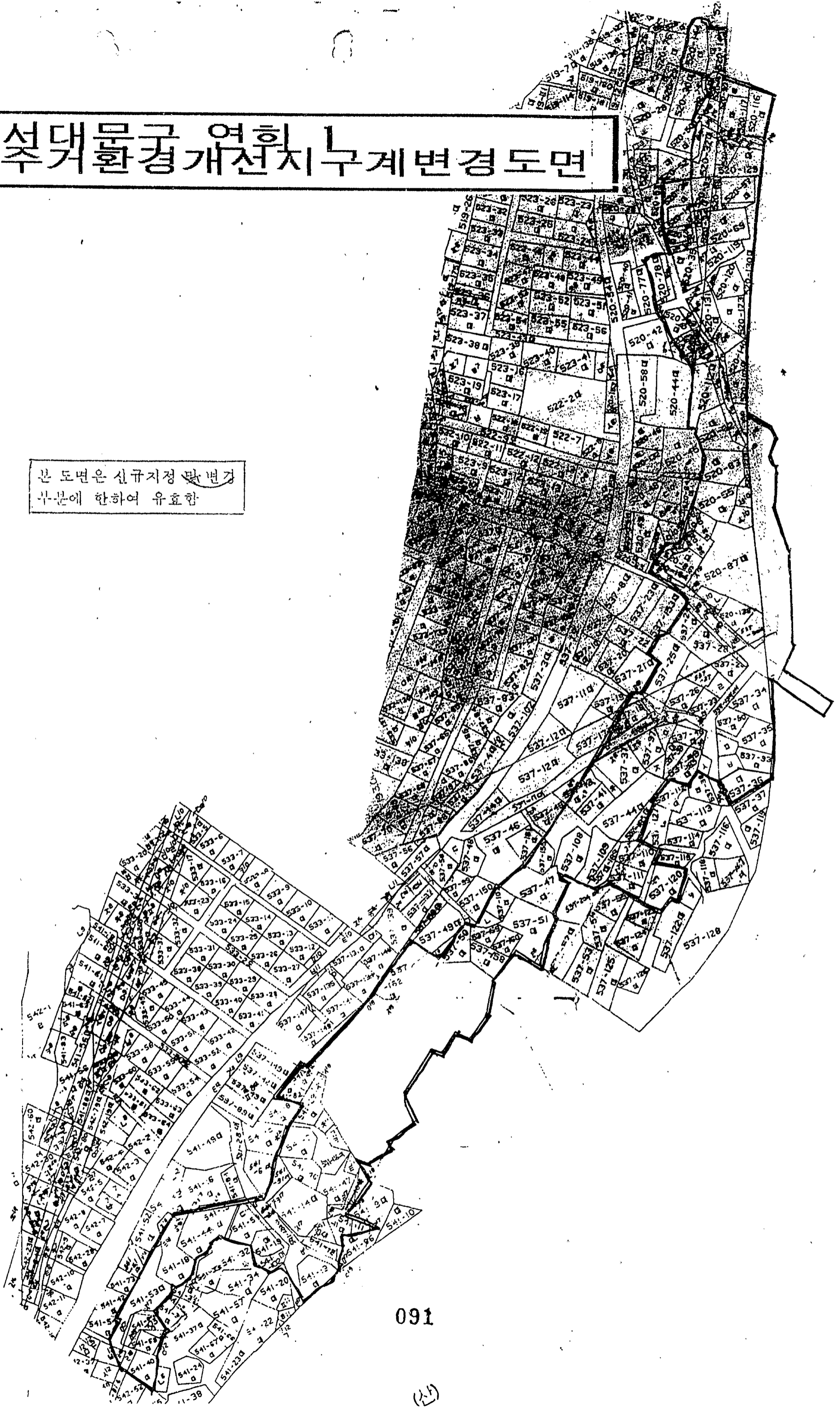
지구명	위치	면적 (㎡)		비고
		기정	변경	
연희제1	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 일대	16,808	16,604	감 204㎡ (면적정정)

나. 관계도서 :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 비치된 도서와 같습니다.



석대물골 연희치구계변경도면

본 도면은 신규지정 판 변경
부분에 한하여 유효함



當 初	16,807	m ²
增 減	감 204	m ²
變 更 後	16,604	m ²

서울특별시 고시 제7994-271 호
1994년 8월 11 일

